

스포츠 조정 · 중재제도의 활용방안 - K 선수 사례 중심으로 -

The Plan for Application of a Sport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ystem
-With Kim yeon-kyoung's Case as the Center -

김규범*
Gyu-Beom Kim

〈 목 차 〉

- I. 머리말
- II. K 선수 사건의 내용과 경과
- III.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 IV. 스포츠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스포츠분쟁, 분쟁해결제도, 스포츠중재제도,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 자유계약선수, 대한배구협회, 국제배구연맹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I . 머리말

오늘날 스포츠 분야에서도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분쟁은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민사관계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저변의 확대와 전문화로 인해 이제는 독자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포츠 조직은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적으로 스포츠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¹⁾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적 분쟁해결)은 민사 분쟁을 재판에 의한 판결로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인 분쟁해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분쟁해결방법에 대한 대체물이나 보충적인 수단에 그치지 않고 ADR제도는 분쟁해결의 본령이 되고 있는데²⁾ ADR의 A를 적절한 분쟁해결이란 의미로 Amicable(우호적인, 원만한) 또는 Appropriate(적합한)로 바꿔서 쓰기도 한다.³⁾ ADR제도에 맞게 스포츠분쟁 해결을 잘 활용하면 상호간에 상처를 입지 않고 우호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판단과 결론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획득과 외국 리그 진출 문제로 소속 구단과 갈등을 겪어 온 여자 프로배구의 ‘간판’ 김연경 선수(이하 “K 선수”라고 한다) 2년 동안 겪었던 분쟁 조정 사례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 K 선수 사건의 내용과 경과

1. 사건의 개요

2008년 9월 글로벌 리먼브러더스 금융위기로 유럽 배구계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주전급 선수들이 러시아 리그나 아제르바이잔 리그로 옮겨가는 가운데 K 선수 역시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다. 일단 2012 FIVB 월드 그랑프리 전까지는 거취를 결정짓겠다고 밝혔고, 결국 여러 이적설 끝에 페네르바흐체와 2년 재계약을 발표했다. 2012-13 시즌에 페네르바

1) 정승재, 「한국스포츠법입문」, 한국학술정보, 2007, p.293.

2) 함영주·황덕남, 「분쟁해결방법론(Dispute Resolution)」개정판, 진원사, 2014, p.8.

3) 조홍준, “民事調停 制度의 發展 方向에 관한 研究-법원 조정센터의 운영과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2, p.10.

호체4)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지 못 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K 선수는 구단에서 팀 내 최고 대우를 받으며 잔류 결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K 선수는 2012년 자유계약 취득 조건을 놓고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⁵⁾와 갈등하게 된다. K 선수는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보낸 뒤 일본 및 터키 리그로 3년간 임대되었다. K 선수는 터키 리그 페네르바체로 옮기려고 하지만 흥국생명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K 선수 측은 임대 기간을 흥국생명 소속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흥국생명 측은 임대 기간을 흥국생명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유 계약 선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⁶⁾ 그리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2012-13 시즌을 앞두고 국제이적동의서 발급에 난항을 겪었다.

(1) 양측 입장

흥국생명은 “아직 K 선수가 ‘김연경 룰’⁷⁾에 의해 국내 V리그에서 FA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흥국생명은 K 선수의 원 소속구단”임을 주장하였다.⁸⁾ K 선수는 흥국생명에서 4년을 났 뒤 해외로 3년간 임대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임대된 기간도 흥국생명에 몸담고 있는 기간으로 치는 논지를 폈다. 그런데 K 선수의 임대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KOVO 규정상 국외의 구단에 임대 계약시 선수 신분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할 말이 있다.⁹⁾

(2) 대한배구협회 입장

대한배구협회에서는 선수와 구단, 리그 어느 한쪽의 의견을 편향되게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해석으로 넘기게 됐는데 FIVB에서는 당사자인 K 선수와 흥국생명과 재협상을 명령했다. 이는 계약이 끝나 자유의 몸이 된 선수도 소속팀이

- 4) 터키의 종합 스포츠 클럽으로, 축구, 농구, 배구 등 20개가 넘는 스포츠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갈라타사라이 SK도 이렇기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두 구단이 라이벌이다.
- 5) 흥국생명의 공식 창단은 1971년 모기업인 태광그룹의 태광산업 여자배구단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전신팀이라 할 수 있는 동양방직 남녀배구단이 창단한 1963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동양방직-동일방직 여자배구단까지 역사를 치면 여자 배구 팀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된 두 팀 중 하나다. 1991년에 흥국생명이 구단 운영을 하기 시작하여 흥국생명 여자배구단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
- 6) 한국 배구 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은 후 입단한 팀 소속으로 6시즌을 활동해야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7) 2010~2011 시즌부터 다른 나라의 리그로 임대된 선수가 시즌 도중 대한민국 리그로 돌아올 경우 잔여 경기수의 25% 이상만 뛰면 한 시즌을 났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룰이다.
- 8) 만약 김연경이 국내 V리그에서 계속 뛰었다면 2010~11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을 텐데 흥국생명은 일본-터키의 3년 임대 기간을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서의 기간으로 치지 않았다.
- 9) 한국배구연맹 선수등록 규정집에 따르면 ‘해외임대 선수의 국내 리그 복귀는 시한의 제한 없이 국내 원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며 복귀 시점부터 소속팀의 당해 시즌 예상 잔여경기(정규 리그 및 포스트 시즌 진출시 해당 경기 포함)의 25% 이상에 참여할 경우 FA 선수 자격 취득 연수(年數)에 산입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은 2010년 8월 28일 개정되었으며 김연경은 소급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3항 위의 1, 2항에 해외임대선수가 선수 정원과 샐러리캡에 명시되어있는 이상 이 조항으로 해외 임대 선수의 국내 FA 선수 자격 취득 연수 여부를 가리는 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 단 년 계약으로 갱신하려는 행태와 함께 FA 신청 연한이 지났음에도 임대라는 이름으로 선수등록 권리를 가지려 하는 한국 배구계의 선수계약 방식에 대한 비판을 어느 정도 염두 해 둔 FIVB의 의중이었다. 다만 FIVB에서는 로컬 룰 존중이 우선이고 당사자 간의 숙고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제시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건의 과정

(1)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2005년~2009년)

K 선수는¹⁰⁾ 이전 시즌 최하위 팀이었던 흥국생명은 K 선수가 맹활약하며 프로화 이후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했고, K 선수는 프로 데뷔 첫 해 정규리그 MVP와 챔피언 결정전 MVP를 비롯하여 신인상, 득점상, 공격상, 서브상, 트리플 크라운까지 모두 휩쓸었다.

K 선수는 2008~2009 시즌에 여자부 최초로, 남녀부 통틀어 두 번째로 V-리그 득점 2,000점과 공격 득점 2,000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소속팀 흥국생명은 이 시즌에 감독 교체와 잦은 선수 부상 등으로 힘든 시즌을 치렀고, 정규 시즌을 3위로 마감했다. 그러나 KT&G와의 NH농협 2008~2009 V-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자신의 시즌 개인 최다득점인 40점을 기록하였고,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지으며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2) JT 마베라스 (2009년~2011년)

자국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불리며 활약하는 동안, 이를 지켜보는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은 K 선수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것이 한국 배구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K 선수 자신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소속 팀 흥국생명은 K 선수가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2008~2009 시즌 이후 임대 형식으로 해외 리그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¹¹⁾ 그렇게 영입을 추진하던 중 한·일 탑 매치에서의 활약으로 일본의 여러 프로 팀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왔는데, 마침내 2009년 5월 17일 소속 팀인 흥국생명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여자 배구 팀 JT 마베라스와 2년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조혜정에 이어 두 번째이자, 프로 배구 출범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여자 선수가 되었다.^{12) 13)}

10) 김연경(金軟景, 1988년생)은 대한민국의 배구 선수로서,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하여 데뷔하였고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배구 전체 MVP를 수상한 바 있다. 포지션은 레프트로서, 키는 192cm, 스파이크 높이는 307cm, 블로킹 높이는 299cm이다. 현재 터키 여자 프로배구리그 페네르바흐체 소속이다.

11) 고진현 기자, “흥국생명 김연경, 시즌 마치고 해외진출 모색”, 스포츠서울, 2009.4.10. 자.

12) 김남권 기자, “흥국 김연경, 일본 JT마블러스 입단 확정”, 연합뉴스, 2009.5.17. 자.

13) “女배구 김연경, 日 JT 마베라스와 2년 계약”, 스포츠칸, 2009.5.17. 자.

(3) 2009 시즌

일본 V리그가 개막된 후 K 선수는 정규리그 모든 경기에 주전으로 출전하며 경기 당 평균 24.9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쳐 소속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전년도 최하위권(10팀 중 9위)이었던 JT 마베라스는 K 선수 영입 이후 개막전부터 25연승을 기록하였고, 이는 일본 V리그 출범 이후 연승 기록으로는 2001년 NEC 레드로켓츠가 기록한 31연승에 이은 2위의 기록이다. 특히 2010년 2월 6일에 열린 도레이 애로즈 전에서는 45득점을 기록하며 흥국생명 시절에 기록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 44득점을 경신하였다.¹⁴⁾ 또한 이런 활약을 두고 일본 V-프리미어리그 소속팀 덴소 에어리비스의 다츠카와 미노루 감독은 K 선수를 “일본에서도 100년에 한 번 나올 선수”라며 칭찬하였다.¹⁵⁾ 정규리그 종료 후, K 선수는 총 득점 696점을 기록하며 득점상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 외에도 공격 성공률 부문 3위·세트 당 공격 성공 횟수 부문 1위·블로킹 부문 10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¹⁶⁾

정규리그 이후 상위 4팀이 겨루는 세미파이널을 1위로 통과한 K 선수의 소속팀 JT 마베라스는 결승에서 전년도 우승 팀 도레이 애로즈에게 막혀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K 선수는 소속팀을 준우승에 올려놓은 공로가 인정되어 감투상(MIP)을 수상하였다. 또, 리그 출전 선수 중 포지션 별로 최고의 선수를 뽑는 베스트6에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활약 때문에 원 소속팀인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에서 그녀를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나머지 4개 여자 배구단이 이를 견제하게 되자 한국 배구 연맹은 이른바 김연경 룰까지 만든다. 김연경 룰이란 2010~2011 시즌부터 다른 나라의 리그로 임대된 선수가 시즌 도중 대한민국 리그로 돌아올 경우 잔여 경기 수의 25% 이상만 뛰면 한 시즌을 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룰이다.¹⁷⁾

(4) 2010 컵 대회

K 선수는 일본 비시즌 동안에 흥국생명에 잠시 복귀하여 2010 수원 IBK 기업은행컵 프로 배구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흥국생명은 FA 자격을 취득한 황연주가 현대건설로 이적하는 대신 KT&G에서 세터¹⁸⁾ 김사니가 영입되었다. 이런 가운데 K 선수의 활약은 많은 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K 선수는 컵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2009-2010 V-리그에서 4위에 머문 흥국생명이 우승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대회에서 K 선수는 MVP를 차지하였다.

14) “김연경, 일본배구 진출 후 최다 45점 폭발”, 연합뉴스, 2010.2.6. 자.

15) “덴소 다츠카와 감독 “김연경, 100년에 한 번 나올 선수””, 마이테일리, 2010.1.23. 자.

16) (일본어) 일본 V리그 공식 홈 페이지(V프리미어리그 여자 2009/10 정규리그 통산 개인 기술 집계표 Best 15)

17) “<A퀵뉴스> 임대선수 시즌 중 복귀관련 ‘김연경 룰’ 확정 외”, 스포츠서울, 2010.2.9. 자.

18) 배구 경기에서 토스(toss)를 올려주는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를 말하며, 토서(tosser)라고도 한다. 특히 기량이 뛰어나고 우수한 세터를 가리켜 토스렌(tosren)이라고 부른다.

3. 사건의 경과

K 선수는 2012년 자유계약¹⁹⁾ 취득 조건을 놓고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이하 흥국생명)와 갈등하게 된다. K 선수는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보낸 뒤 일본 및 터키 리그로 3년간 임대되었다. K 선수는 터키 리그 페네르바체로 옮기려고 하지만 흥국생명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 K 선수 측은 임대 기간을 흥국생명 소속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흥국생명 측은 임대 기간을 흥국생명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유 계약 선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었다.²⁰⁾

K 선수는 독자적으로 에이전시를 얻어 터키 페네르바체 유니버설과 2년 계약을 하였다. 여기서 흥국생명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에이전시는 흥국생명은 이기적인 행동으로 한국 배구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하며 대한배구협회에 국제 이적 동의서(ITC) 발급을 요청한다. 하지만 대한배구협회는 흥국생명의 편을 들고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는 K 선수를 임의탈퇴²¹⁾로 공시한다. 그리하여 K 선수는 국제 이적 동의서가 없어서 계약할 수 없고, 임의탈퇴 신분으로 흥국생명으로도 복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K 선수에게 한국배구연맹과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흥국생명 소속선수로 두고, 페네르바체로 임대한다. 그 상태로 시즌을 치르다가 국제배구연맹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서였다. K 선수측은 합의서 내용²²⁾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대한배구협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²³⁾ 결국 흥국생명은 합의서를 국제배구연맹에 제출한 후 국제배구연맹이 ‘K 선수는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했으며

19) 프로 선수들이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

프로 야구·축구 등 프로 운동경기에서 각 구단은 소속 선수들을 선발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도록 했다. 주된 이유는 선수들이 자유롭게 계약을 요구할 경우 유명 선수들의 계약금이 천정부지로 솟아 구단 경영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임금을 통제했을 뿐 아니라 선수들을 구단에 인신 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단이 소속 선수와 재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선수는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어 사실상 선수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불리한 이 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프로 선수로 재직할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구단과 협상할 권리를 주도록 한 것이 자유계약선수제이다.

20) 한국 배구 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은 후 입단한 팀 소속으로 6시즌을 활동해야 자유 계약 선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1)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폐쇄형 독립 리그에서 선수가 소속 팀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선수단 무단이탈, 혹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불명예 은퇴할 경우, 보류 조항을 가지고 있는 소속 구단이 임의대로 선수를 묶어 놓는 것을 말한다. 즉, 방출됨과 동시에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웨이버 공시와는 다르게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도 불가능하다. 참고로 원 소속팀과의 재계약도 임의탈퇴 공시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사실상 국내에서 뛰지 말란 얘기다. 보류 조항이 없는 완전 자유계약 시장인 유럽축구계에선 당연히 계약 해지에 양자가 동의하면 바로 남남이기 때문에 임의탈퇴 그런 게 없다. 류현진이나 김연경의 사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임의탈퇴는 자국 리그에 속해있었던 선수가 자국 내에서 뛰지 못하도록 거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의 리그 계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즉 해외 팀이 이 선수를 뛰게 한다면) 한국 리그에서 이 선수의 해외팀 계약을 막을 방법은 없다. 류현진 처럼 양 국가 간 선수 이동 협정이 맺어져있다면 이 협정이 우선이지만 아니라면 이천수나 김연경 처럼 해외리그에서 뛰기도 한다.

22) 합의서 내용은 김연경에게 불리한 조항 투성이. 단, 마지막에 양 측은 FIVB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다. 김연경측은 그걸 노린 듯하다.

23) 임종률 기자 (2012년 10월 22일), “배구협·흥국생명 “김연경 주장, 사실과 달라””. 노컷뉴스

로, 흥국생명 소속선수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K 선수는 계속해서 애초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합의서를 공개한 것은 부당하며 항의했다. 기존 합의서라고 작성한 문구가 국제배구연맹으로 넘어가면서 결정문으로 바뀌었으며 중재를 해야 할 배구협회 및 연맹은 흥국생명과 K 선수 사이에 유효한 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흥국생명의 편을 드는 등 처음부터 치우친 자세로 일련의 사건을 대해왔다. 결국 13-14 시즌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K 선수는 코트 위에 설 수 없었고, 한 배구 커뮤니티에서 유명인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K 선수 사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 새누리당에서 대한배구협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민주통합당에서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인 힘과 맞물리게 되었다.

이 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2012년 국정감사²⁴때 ‘김연경 사태’가 이슈로 떠오르며²⁵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2012년 10월 19일 K 선수는 선수최초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해줄 것을 호소했으며 이 날 국회 문방위원회가 주재한 국정감사 정책질의회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 등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에게²⁶ 국제이적동의서(ITC)²⁷ 발급 및 FA 규정 개정을 촉구하였다. 사태가 커지자 결국 2012년 10월 22일 대한배구협회는 K 선수에게 1년 기한의 임시 국제이적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결정했다.

2013년 7월 1일, 흥국생명은 결국 K 선수를 임의탈퇴 처리했고 한국배구연맹(KOVO)²⁸는 이를 승인했다. 흥국생명 입장으로는 K 선수가 해외 진출하는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K 선수를 임의탈퇴 처리했다.

결국 7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7월 25일까지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가대표팀 은퇴도 불사하겠다’라고 K 선수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24)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공개 청문회이다. 최초의 시작은 영국이며, 미국에서도 도입하여 제도적인 정립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기형적인 형태로 변종이 만들어져서 진행하고 있다.

25) 국정감사가 있기 전부터 김연경의 팬들이 중심이 되어 SNS를 통해 정치권에 구명 활동을 벌여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화답을 하면서 불씨를 지폈다.

26) 이 날 감사는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배구협회장 임태희는 출석하지 않았다.

27) ITC(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ion)는 한 선수의 국제 이적, 임대에 필요한 증명서로써 아마추어선수, 프로 선수의 국제적 이동에는 꼭 필요한 증명서이다.

28) 한국프로배구를 총괄하는 기구. V리그와 KOVO컵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스포츠 연맹들은 모두 남자부와 여자부를 나눠서 운영중인데 프로배구는 남녀 모두 한국배구연맹이 직접 주관한다. 약칭으로 KOVO(코보)라 부른다. KOREAN Volleyball Federation KVF에서 따온 것. 처음에는 KVL로 하려고 했으나 KBL과 혼동될 수 있어서 KOVO로 바꿨던 것이다.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kovo.co.kr>

4. 사건의 결과

K 선수와 페네르바체는 국제배구연맹에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계약이 유효함을 알렸고 대한배구협회가 전달한 문서에 의문을 가진 국제배구연맹은 K 선수의 계약 사실과 신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페네르바체는 직접 스포츠 구단 내부에서 전문적인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K 선수에게 최선을 다했고, 국제배구연맹은 K 선수와 흥국생명 사이에 유효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문’으로 오역한 ‘합의서’를 토대로 결정 내역 판결을 뒤집게 됐다.

2013년 9월10일 FIVB에서 사실상 K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013-2014 시즌까지는 흥국생명 소속이고, 페네르바체에선 상한선 22만 8750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며, 흥국생명은 그 이후 K 선수의 행보를 막을 수 없다고 결정지었다. 또한 K 선수가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 구단이 없어진다고 판정했다.

2014년 2월 7일, 국제배구연맹은 K 선수에 대하여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기재한 최종 공문을 대한배구협회에 통보하였다. K 선수의 이적에 대하여 흥국생명과 함께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한배구협회가 이 공문을 통해 오히려 페네르바체 SK로부터 이적료를 받아 낼 수 있게 됐고, 흥국생명은 K 선수를 잡으려다가 이적료는 물론 실익을 얻지 못하였다.²⁹⁾ K 선수 사건의 분쟁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률적 근거를 볼 수 있다.

5. 법률적 근거

(1) 분쟁 관련 계약내용

K 선수와 흥국생명 구단과의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제2조 1항 계약기간을 보면 본 계약의 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와 2항 전항의 계약기간의 계산에 있어 구단과 선수가 연맹의 회계연도 개시일 매년 7월 1일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계약 체결년도에 한하여 연맹의 회계연도 종료 익년 6월30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2) 배구선수의 이적 관련 규정

1) 선수의 국제이적은 반드시 국제배구연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자국 내 이적은 그 나라 협회 또는 연맹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국제 이적은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을 지켜야

²⁹⁾ 국제배구연맹 “김연경 자유…흥국생명 선수 아냐”, 연합뉴스, 2014.2.7. 자.

한다. 협회는 그들의 산하 구단들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국내 구단으로 선수 이적 방식을 결정한다. 그들은 해외 구단으로 선수 이적에 대해 적용되는 국내 규정을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규정은 보충적인 것이고 국제배구연맹 스포츠 규정의 문구나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2) 대한배구협회 지도자 및 선수 해외취업에 관한 규정

선수해외취업 규정10조에 선수로서의 해외취업은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동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다. 국가의 협회들(National Federations, 이하 NFs, 한국은 대한배구협회)은 선수가이적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반드시 국제배구연맹의 국제이적동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당시 대한배구협회는 선수의 국제이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선수 해외취업 조항을 통해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즉 국제배구연맹의 참가단체인 대한배구협회는 선수가 해외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국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KOVO자유계약선수(여자)관리규칙보상규정

구단의 보상 및 이적료 등 10조 1항은 전 시즌에 다른 구단에 소속했던 FA선수와 다음시즌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선수의 원소속구단의 직전시즌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4명의 보호선수(당 해년도 FA영입선수 포함)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소속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소속구단의 직전 시즌의 연봉 300 %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구단이 택일하여 결정한다.) 국제이적의 경우 10조 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국 KOVO 규정은 KOVO 내에서만 유효하다.(2013년3월22일 개정 전)

4) KOVO 선수등록 규정

해외임대선수의 등록 제10조에 3항에는 해외임대 선수의 국내리그 복귀는 시한의 제한 없이 국내 원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가 가능하며, 복귀 시점부터 소속팀의 당해 시즌 예상 잔여경기(정규리그 및 포스트시즌 진출 시 해당경기 포함)의 25% 이상에 참여할 경우 FA 선수 자격취득 연수(年數)에 산입한다. [2010.8.28.개정]

2010년8월28일 KOVO 규정 개정 이전에는 해외임대선수와 국내임대선수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2009년5월18일 당시에는 FA선수의 자격취득에서 말하는 정규리그가 KOVO 내에서 진행되는 정규리그라고 한정 지을 수 없었다. 소위 3항은 ‘김연경룰’이라 불리는 것이지만 실제 K 선수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 2010년8월28일 개정된 KOVO 규정을 해외임대기간이 FA연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K 선수에게 불리하게 소급 적용하였다.

2013년3월22일 KOVO이사회는 FA자격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K 선수에게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선수에게 불리한 내용은 소급적용하고, 유리한 내용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스포츠 룰에 위배된다고 본다.

(3) 국제이적의 경우 Club of Origin(원 소속구단)이란 해당선수와 실제 계약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

선수를 원하는 영입구단은 선수의 원 소속협회와 재정과 이적 조건을 협상한다. 만약 선수가 예정된 이적일 이후에 그의 현재 구단과 계약 중에 있다면(원 소속구단), 영입구단은 그의 원 소속구단과도 역시 선수의 이적을 위해 재정과 이적 조건을 협상해야만 한다.

6. K 선수 사건의 교훈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한국배구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은 후 입단한 팀 소속으로 6시즌을 활동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김연경 룰에 따르면 2010~2011시즌부터 다른 나라에 임대된 선수가 시즌 도중 대한민국 리그로 돌아올 경우 잔여 경기수의 25% 이상만 뛰면 한 시즌을 뛴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국배구연맹은 K 선수에게는 그 룰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임대로 활동한 2년 또한 흥국생명의 소속이라는 K 선수의 주장과 선수의 개인 실력 향상과 배구계의 발전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3년간 보내 준 것인 만큼 해외 임대기간을 소속선수로 2년 뛴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흥국생명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의견을 원활하게 조정 중재하여야 할 제도와 장치의 부재가 정말 아쉬웠으며 스포츠중재제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스포츠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1.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는 재판외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사재판 이외의 제도, 즉 상담이나, 화해, 알선, 조정, 중재에 의해 처리하는 제도이다.

ADR은 사법부에 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흑백 논리적 결론이 아닌, 장래를 향한 이익조

정 적 분쟁해결에 그 비중을 두고 있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즉, 분쟁 발생 시 우선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이러한 노력이 결렬되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주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가 이룩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2) 장점과 단점

1) ADR제도의 장점은 첫째, 법원의 간섭이나 통제는 필요한 경우 최소화하고, 둘째,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분쟁을 해결할 조정인, 중재인 등을 당사자 스스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보다 비교적 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³¹⁾, 셋째, 절차의 진행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여 탄력적이며, 특히 엄격한 소송절차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넷째, 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이 잘 보호되고, 비형식적이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한 후에도 당사자 간에는 재판에서처럼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³²⁾

2) ADR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충분한 절차보장과 사실관계의 조사가 행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ADR절차가 경제적, 사회적 강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절차로 전략할 수 있고, 둘째,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만을 강조하다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많으며 셋째, 판단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자의적이거나 양당사자의 주장을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식의 절충 주의적 판단이 될 위험성도 내재한다고 볼 수 있음은 물론 넷째, 만약 당사자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은 대리인 의식이 작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해할 우려도 있음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상소절차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내려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해야만 하는 등의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는 없다.³³⁾

(3) ADR의 종류

ADR종류는 알선, 조정, 화해, 중재제도가 있으며, 최근에는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방식인 조정-중재(Med-Arb)제도가 나타나고 있다.

1)알선은 스포츠 관련 법적분쟁에 제3자가 개입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합의를 위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알선 단계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 간의 비밀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30) 연기영,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의 설립방안”,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p.62.

31) 이러한 직접 선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인정되는 범위가 한정될 수 있다.

32) Ulrich Hass(이병준 역), “개인의 권리보호와 단체자치사이의 스포츠재판”,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10., p.305.

33) Ulrich Hass(이병준 역), 위의 논문, p.305.

2) 조정은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절차에 의한 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한 분쟁해결을 본질로 하면서도 제3자인 조정자의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의 쟁점에 관한 정보를 듣고 이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임의의 분쟁처리절차이다.

3)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분쟁해결제도이다(민법 제731조). 소송상의 화해는 그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 한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06조), 당사자가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중재 판정부는 합의된 화해의 내용을 판정으로써 기재할 수 있다.³⁴⁾ 조정은 제3자가 개입되는데 반하여 화해는 전적으로 분쟁당사자만에 의하여 해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범의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구속력 있는 판정을 구하는 동시에, 분쟁당사자가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얻는 단심제의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³⁵⁾

2. 분쟁 조정·중재(Med-Arb) 제도

(1) 조정·중재의 의의

‘조정-중재’는 조정과 중재를 혼합한 방식³⁶⁾으로 일종의 강제력이 부가된 조정절차라고 할 수 있다.³⁷⁾ 1단계로 분쟁의 이슈를 확인하는데 조정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2단계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스포츠분쟁의 분쟁해결방식으로 효과적이라고 한다.³⁸⁾

대부분의 스포츠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만 조정이 더 유용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34)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규칙 제47조는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 중에 당사자가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요구하면 합의된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으로써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5)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관계된 분쟁을 스포츠 중재판정부(이하 “중재판정부”)에 중재를 요청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 합의는 서면 또는 그 외 의사를 명확히 할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스포츠중재에 있어서의 당사자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36) 중재-조정(Arb-Med)은 중재와 조정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먼저 중재절차를 진행하되 중재자가 그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봉한다. 그 후에 당사자들이 협상을 진행하거나 중재자를 조정인으로 참석시켜 조정을 진행한다. 그리고 협상이나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당사자들이 봉투를 열어 중재 결정된 대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함영주·황덕남, 앞의 책, p.349).

37)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3.2, p.105.

38) Ian Blackshaw, “ADR and Sport : Setting Disputes Through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The FIFA Dispute Resolution Chamber, and the WIPO Arbitration & Mediation Center”, Marquette Sports Law Review, Fall 2013, Marquette University, p.2.

예컨대 프로스포츠에서 여러 팀과 선수들이 집단적인 협상으로 합의하는 방식과 같은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들 수 있다.³⁹⁾

조정이 중재보다 유용한 이유는 분쟁을 더욱 비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자는 의사 결정자와 같지만 조정자는 해결책 제시자(settlement-facilitator)와 같은 차이가 있으며,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권리(rights)’에 초점이 있고, 조정은 ‘이해(interests)’에 초점이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정은 분쟁해결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통해 추가적인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⁴⁰⁾

조정(Mediation)은 일반적으로 중립적 지위의 제3자인 조정자(mediator)가 분쟁당사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를 일컫는 바, 대부분 3인 이상의 위원이 당사자의 출두를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건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안이 복잡하여 기술적, 법률적 쟁점이 많은 사건에 적합한데, 이처럼 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이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정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조정절차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조정절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조정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용인할 수 있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제3자인 것⁴¹⁾,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이 요구된다. 다만 조정자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재판절차에서의 법관 또는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인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중재(Abitration)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합의>에 따라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승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을 얻는 자주적 분쟁해결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⁴²⁾

중재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즉, 소송에서는 당사자 간에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중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으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나, 중재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 중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⁴³⁾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에 소제기는 부적합하고, 따라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원칙적으로 법원은 중재에 관여하지 못하고(중재법 제6조),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수(중재법 제11조), 중재인 선정(중재법 제12조), 중재절차(중재법 제20조), 중재지(중재법 제21조), 중재언어(중재법 제22조), 적용할 실체법

39) Mark Grabowski, "Both Sides Win: Why Using Mediation Would Improve Pro Sports", Harvard Journal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Spring 2014,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pp.213-214.

40) Mark Grabowski, 위의 논문, pp.194-196.

41) 여기서 '당사자들이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조정자의 '협력'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서 조정의 전제가 된다.

42) 연기영, 앞의 논문, p.63.

43) 오석용, "스포츠중재의 효율성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2., p.17.

(중재법 제29조) 등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하게 당사자 자치가 적용된다.⁴⁴⁾

중재인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어야 하고, 그 중재권한이 국가권력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부터 기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률 기타의 규정에 기하여 국가기관이 하는 중재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중재라고 할 수 없다.⁴⁵⁾

중재판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중재법 제35조). 그러므로 대부분의 중재제도에는 중재절차내의 상소제도가 없고, 법원에 항소나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중재절차상의 하자가 중재의 실행 또는 판정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그에 의한 중재판정은 법원에 의한 최소대상이 될 수 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그리고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중재법 제37조).⁴⁶⁾

(2) 특징 및 문제점

조정·중재제도는 조정·중재자의 결정을 받아들여려는 당사자들의 자발적 분쟁해결제도이며, 조정·중재자의 권위는 법규나 계약 등이 아닌 당사자들 스스로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스포츠분쟁에 있어서 조정 또는 중재제도의 경우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나아가 합의의 수단으로서 사건평가를 활용할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조정제도의 경우 조정 특유의 간편한 집행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정결과의 실현은 의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하게 되어 집행력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그 외 당사자에 의한 조정위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조정위원에 대한 제척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그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겠다.⁴⁷⁾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법 제35조에 의해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법 제36조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같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⁴⁸⁾

44) 임건면,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스포츠와 법 제9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6.10., p.251.

45)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2011, p.6.

46) 목영준, 위의 책, pp.222~223; 다만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무관 등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생기는데 반하여, 중재판정은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집행력이 생기므로 그때까지는 잠정적인 집행력만을 가진다 할 것이다.

47) 萩原金美, “民事調停における當事者權の保障”, 別冊判例タイムズ4号 民事調停の諸問題, 1977, p.39.

48) 중재법 32조 2항에서는 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3) 다른 권리구제절차와의 연계성

조정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도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조정을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한 중재절차에도 당사자 쌍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상호양보나 제3자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재판과 유사하고 화해나 조정과는 다르다. 그러나 비록 재판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재는 국가권력에 기초를 두는 법원의 법률에 의한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자주적 의사에 기초를 두는 사적 법원의 경험법칙,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관행이나 관습법 및 형평과 선에 의한 판단에 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당사자의 자주적 측면에 착안하면 중재는 화해나 조정에 가깝고 재판과는 다르다. 결국 중재는 강제적 분쟁해결방법인 재판과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인 화해나 조정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V. 스포츠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1. 스포츠중재의 필요성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 방안 중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사안을 판단하는데 적용할 절차의 결정과 그 판단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며, 스포츠 법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스포츠분야의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고, 비공개 심리이기 때문에 업무상 보안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스포츠 중재는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배제하여 상호간에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당사자가 진행 일정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므로 소송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스포츠 법 전문가가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모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 사이의 왜곡된 감정을 해소시켜 줄 수 있으므로 분쟁의 종료 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⁴⁹⁾

한편 중재는 국가주권의 범위를 넘어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49)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3., p.11.

제거대상인 분쟁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림픽이나 월드컵 및 세계선수권 등 국제적인 스포츠경기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또는 각국의 프로선수들이 다른 나라 구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 스포츠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한다면 타국에서 집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스포츠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 효력이 승인되어 집행가능성이 매우 높다.⁵⁰⁾ K 선수 사건에서 보듯 사법적 해결보다는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 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한국중재위원회가 있었다면 국가 행정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중재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중재제도가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보다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국제 스포츠의 경우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 CAS)의 조정 및 중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국내에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⁵²⁾ 그리고 CAS에 제기되는 스포츠 분쟁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국제 스포츠 분쟁에서 중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의 장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³⁾

2. 스포츠중재기구

(1)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라함)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1984년 설립된 기관으로,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법원이 아닌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상설중재 기관이다.⁵⁴⁾

50) 전홍구, 위의 논문, pp.11-12

51) 전홍구, 위의 논문, p.12; 스포츠 분쟁에 있어서 ADR제도의 장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3., pp.123-124;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통권 제30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2., pp.82-85.

52) 해외 스포츠분쟁해결기구 현황에 관한 연구로는, 김대회,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3., pp.167-173.

53) 전홍구, 앞의 논문, p.12; CAS에 제기되는 스포츠 분쟁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00년 76건, 2001년에는 42건, 2002년에는 86건, 2003년에는 109건이 제기된 바 있고, 2003년에는 107건(보통중재절차 61건, 항소중재절차 46건), 2004년에는 271건(보통중재절차 9건, 항소중재절차 252건, 특별중재절차 10건), 2005년에는 198건(보통중재절차 9건, 항소중재절차 185건), 2006년에는 204건(보통중재절차 17건, 항소중재절차 175건, 특별중재절차 12건), 2007년에는 252건(보통중재절차 22건, 항소중재절차 230건)이 처리되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설치되어 활동하는 특별중재부의 경우에는 1996년 6건, 1998년 5건, 2000년 15건, 2002년에는 8건, 2004년에는 10건, 2006년에는 12건이 처리되었다. (이재경, “스포츠분쟁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법률신문 3685호, 2008.9., p.15).

54)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2., pp.95-107.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스포츠분쟁의 해결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에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가 설립되어 이 기구로 하여금 CAS의 위원과 중재인을 선임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⁵⁵⁾

ICAS는 스포츠중재규칙(Code)의 제정 및 개정, 소속위원의 선출, CAS 중재인 명부 작성, 중재인의 제척결정, CAS의 운영(상설 또는 임시중재기관의 설치), CAS 사무국장 임명 및 해임, 기금의 조성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⁵⁶⁾

CAS는 첫째 상거래계약, 프로젝트약이나 초상권에 관련되는 문제 등을 취급하는 일반중재부(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둘째 스포츠 단체의 결정에 대하여 경기자 혹은 경기단체가 제소하는 경우에 분쟁을 해결 해주는 항소중재부(Appeals Arbitration Division), 올림픽이나 영연방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등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 of the CAS)로 구성된다.⁵⁷⁾

(2) 한국 스포츠분쟁 중재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한국스포츠법학회가 창립되어 스포츠분쟁 처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던 중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경기에서 김동성 선수의 실격판정⁵⁸⁾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체조경기에서 양태영선수가 오심판정⁵⁹⁾으로 한국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스포츠분쟁에 대한 관심과 스포츠중재기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5년 쇼트트랙 파벌싸움 등 경기단체의 갈등으로 체육계에 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 2006년 5월 17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 :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가 창립되었다. KSAC는 1998년 미국중재협회(AAA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와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JSA :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에 이어 3번째로 설립된 기구였다. 그러나 2009년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통합되면서 중재실적 미비, 사무국 독립운영의 비효율성, 대한체육회 상벌위원회 기능과 중복 등의 이유로 대한체육회 정관개정에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근거규정을 2009년 6월 29일부로 삭제하였고 2009년 12월 해

55) 김용길, 앞의 논문, p.116; 정승재, “스포츠 조정 · 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p.72.

56)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pp.96-97.

57) 연기영, 위의 논문, p.97; 김대회, 앞의 논문, pp.167-168.

58)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한국의 김동성 선수가 결승전을 먼저 통과했지만, 호주의 제임스 휴이시 주심은 미국의 아폴로 오노(Apolo Anton Ohno)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크로스 체킹 반칙을 범했다고 실격 판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KOC는 해당심판판정의 부당성을 이유로 CAS 특별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통권 제1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11., p.417.

59) 아테네 제28차 하계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한국의 체조선수 양태영이 2004년 8월 18일 남자 체조 개인종합 결승전에서 시작점수(Start Value : SV)를 10점이 아닌 9.9로 받은 결과 동메달에 그치게 되었다면서 심판진의 채점오류를 이유로 2004년 8월28일 CAS 특별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보통중재부에 이송되었으나 오판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가 즉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종료 후에 심판의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p.418).

체되었다.⁶⁰⁾ 2010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단돼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사라졌다.

2014년 1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어이없는 행정 실수로 ‘한국 셔틀콕의 간판’인 이용대, 김기정이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건’과 관련, 한국 스포츠 행정미숙은 물론 스포츠 분쟁 분야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스포츠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검사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2013년 3월, 9월, 11월 3차례의 소재지 보고 기피 혐의로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들이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닌 만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 관련 기구가 없어 반복 판정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⁶¹⁾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판정시비, 약물검사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스포츠 분쟁을 담당하는 기구다. 미국과 영국, 일본,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은 CAS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국가별 스포츠중재기구를 운영하며 국제적 스포츠 분쟁과 CAS 제소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국가별 스포츠중재기구엔 국제 스포츠계의 규정을 제대로 알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2009년 12월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 스포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경기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제소절차를 밟아야 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도 협회 차원에서 제소를 준비하였다.

국내엔 관련 전문가가 있으나 한국스포츠중재기구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K 선수 사건에서도 보듯 스포츠 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다시 설립해야 한다고 제기한다.⁶²⁾

60)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pp.416-418;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 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p.107; 김용길, 앞의 논문, pp.120-121; 김대희, 앞의 논문, p.160.

61) 이용대측은 2014년 1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소재지 보고 불응이유로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김기정과함께 1년정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장을 제출, 행정 실수 인접을 부각시켜 징계가 취소되었다.

62) 이와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문대성의원은 2013년 12월 “우리나라가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몰라 여러 차례 부당하게 금메달을 놓쳤다”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설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V. 맺음말

스포츠분쟁의 경우 신속성, 전문성 등이 특히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스포츠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재의 공정성 전문성 강제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즉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반드시 설립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순위 세계 7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종합순위 세계 5위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국제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다음으로, 최대 스포츠시장을 보유한 스포츠 강국인 미국도 하지 못한 기록이다.⁶³⁾ 이처럼 우리의 스포츠 위상과 스포츠 관련 산업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고, 이와 함께 다양한 스포츠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중재기구가 없다는 것은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에 걸맞지 않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주체국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와 스포츠 선진화에도 스포츠 중재위원회 해체는 스포츠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⁶⁴⁾

이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스포츠 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고 스포츠 자체의 자주적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스포츠 자치의 실현을 위하여도 필요하다.⁶⁵⁾ 즉, 중재는 국가의 재판주권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자치에 의한 자주적법정인 것이다.⁶⁶⁾

K 선수 사태가 런던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열린 국정감사기간에 불거지지 않았다면 K 선수 측에 유리하게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K 선수 자신이 바람대로 국제무대(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물론 반갑지만 그런

63) 전홍구, 앞의 논문, p.14; 세계 4대 국제스포츠 대회(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IAAF 세계육상선수권)을 모두 개최한 나라를 스포츠 그랜드 슬램 달성국가라 하는데, 그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으로 6개 나라밖에 없다.

64) 전홍구, 앞의 논문, p.14.

65) 김대회, 앞의 논문, p.173.

66) Richard Zöller, Zivilprozessordnung, 24. Aufl., 2004, vor § 1025 Rdnr. 3; Klaus Lionnet, Handbuch der internationalen and nationalen Schiedsgerichtsbarkeit, 2. Aufl., 2001, S. 46.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국내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지속되었다면 국내에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무려 2년 동안 이어온 여자배구 K 선수의 이적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 K 선수의 전 소속팀 흥국생명이 국제배구연맹 결정에 대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포기하면서 K 선수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프로스포츠는 사업적 특성상 자치적 규범이 필요하다.

최근 스포츠 스타들의 해외진출은 과거와는 달리 비인기 종목뿐만 아니라 최정상급 스타에서부터 꿈나무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향해 세계 곳곳에 스포츠 현장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가 확산되어 있다.

따라서 구단 측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의 시급한 개선과 선수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법 전문가와 선수들 중심으로 투명성, 공정성, 합리적인 주체적 스포츠중재 제도의 체계적인 설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대희,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3.
- 김상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제15권 통권 제30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2.
- 김용길, “ADR을 활용한 스포츠사건의 해결에 관한 고찰-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3
-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11.
- 연기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비추어본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의 역할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2
- _____, 「스포츠 법학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3.
- _____, “스포츠분쟁 해결기구의 설립방안”,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1.
- _____,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4호 통권 제13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7.11.
- 오석웅, “스포츠중재의 효율성과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2.

- 이재경, “스포츠분쟁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법률신문 3685호, 2008.9.
- 임건면, “스포츠 중재합의와 내용통제”, 스포츠와 법 제9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6.10.
- 전홍구,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중재합의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6.3.
- 정승재, 「한국스포츠법 입문」, 한국학술정보, 2007.
- _____, “스포츠 조정·중재제도의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통권 제14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2.
-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 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4.3.2
- 조홍준, “民事調停 制度의 發展 方向에 관한 研究-법원 조정센터의 운영과 사례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함영주·황덕남, 「분쟁해결방법론(Dispute Resolution)」개정판, 진원사, 2014.
- Ulrich Hass(이병준 역), “개인의 권리보호와 단체자치 사이의 스포츠 재판”, 스포츠와 법 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10.
- Ian Blackshaw, “Settling Sports Disputes by ADR: Some Major Sports Dispute Resolution Bodies Modelled on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Dispute Resolution International*, October 2009, IBA Dispute Resolution Section.
- _____, “ADR and Sport : Setting Disputes Through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The FIFA Dispute Resolution Chamber, and the WIPO Arbitration & Mediation Center”, *Marquette Sports Law Review*, Fall 2013, Marquette University.
- Mark Grabowski, “Both Sides Win: Why Using Mediation Would Improve Pro Sports”, *Harvard Journal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Spring 2014,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 Richard Zöller, *Zivilprozessordnung*, 24. Aufl., 2004.
- 萩原金美, “民事調停における當事者權の保障”, 別冊判例タイムズ4号 民事調停の諸問題, 1977.

<참고자료>

- 국회의원 노웅래, 최민희 기자회견 문 자료 2012. 12. 19.
- 김연경 선수 분쟁 관련 자료-대한배구협회 질의서 2013. 4. 5.
- 법무법인 한별 김연경 선수의 해외이적에 대한 질의서 2013. 7. 10.
- 스포츠서울,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마이데일리 신문 스크랩
-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http://www.kcab.or.kr>
- 인스포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inspokorea.com>

ABSTRACT

The Plan for Application of a Sport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ystem - With Kim yeon-kyoung's Case as the Center -

Gyu-Beom Kim

An ADR arbitration system has a necessary value in the sports industry for settlement of disputes.

Sports disputes should be resolved independently by enacting internal regulations within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w rather than treated as a civil action.

If the dispute is not fair and transparent, it may cause distrust.

Because an arbitration system has values such as speed, flexibility of economic decisions, professionalism of arbitrator and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relate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has emerged recently.

We have to assign sports experts to reactivat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s which existed from 2006 to 2009 in Korea.

Many countries, such as the UK, USA, Canada, New Zealand, Hungary, the Netherlands, Poland, Germany, and Japan, which attain advancement of sports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establish and run their own sports arbitration agencies.

However, Korea disbanded its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for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In 2012, after their disbanding, athlete Kim Yeon-kyoung came into conflict with Heungkuk Life over terms of free agent acquisition and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ion.

Finally they were able to settle those political conflicts. However if there had been related laws in Korea, they could have resolved those problems easily without international disputes.

Practically, it would have been almost impossible for Kim Yeon-kyoung to win the dispute. But her problem became an issue after the London Olympics, so she could win.

Although it is well for her to take an active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it left much to be desired on account of the intervention of political circle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If the sports arbitration commission committee in Korea had still been active, it could have come to a peaceful settlement domestically.

Therefore we have to reestablish a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centered around experts of sports law.

Key Words : Sports Disp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ports Arbitration System, Korea Sports Arbitration Committee(KSAC),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CAS), Free Agent(FA), Korea Volleyball Association(KV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Volleyball(FIVB)